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1. 개요

1.1. 사례집 마련 배경

- 「화장품법」개정(’21.8.17.)으로 식품 모방 화장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시행: ’21.9.18.)됨에 따라,
 -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판매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1.2. 사례집의 한계점 등 안내

- 동 사례집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부 사례만을 공유한 것으로, 사례집에 예시되어 있지 않다고 적합하다는 의미가 아님. 동 사례집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개정 취지 및 조문 규정 등을 참고하여 화장품법령에 적합 여부를 심도있게 고려하여 개별 제품에 적용이 필요함
- ※ 처분 판단시, 일반적인 위반여부 판단이 곤란한 제품의 경우, 민관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화장품법령에 따라 화장품은 사전 허가·신고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별 제품의 적절성 판단은 각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화장품에 대한 유통·판매 후 안전관리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음

2. 관련 규정

2.1. 화장품법 개정 개요

○ 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한 판매금지 → 「화장품법」 개정·공포

- (대상) ①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②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①식품 모방으로 오인우려 + ②섭취 등 오용 우려 모두 해당하는 제품

- ※ 일반적인 소비자 또는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을 보고 판단할 때,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임
 - 단순히 식품의 냄새(딸기향, 사과향 등), 색상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섭취 우려가 없는 식품 상표, 포장 외형만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 DIY 등 소비자가 최종 혼합·제조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최종 완제품을 기준으로 동일한 원칙 적용 대상으로 판단함
- ※ 제도 취지상 영유아·어린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섭취하지 말 것’, ‘화장품임’ 등 단순한 경고표현을 제시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1.9.18.)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21.9.18.) 후 제조·수입(통관일을 기준)되는 품목부터 적용

☞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 완료된 제품은 유통·판매 가능

- ※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소비자 오인여부 및 위해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반시 벌칙/처분)

구분	근거규정	벌칙/처분 내용
벌칙	「화장품법」 제36조(벌칙) 제1항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개별기준 더목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 다만, 동 규정 위반 적발 제품은 동일한 용기·포장 등으로는 지속 판매가 불가함
회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개정 예정)	회수대상 화장품

2.2. 화장품법 제·개정 규정

기 준	개 정 (2021.8.17.개정, 2021.9.18.시행)
<p>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化妆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제15조(영업의 금지) ----- -----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p>
<p>부 칙 <법률 제18448호, 2021. 8.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u>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u>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u></p>	

3. 식품 모방 화장품 위반 우려 사례

3.1. 용기 ·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

사례1) 곰돌이 형태의 화장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유명 식품(젤리)과 유사함
		냄새	다양
		색깔	식품 색깔과 유사
		크기	식품 크기와 유사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크기(대형사이즈 등)가 명확히 달라 유명 식품 제품과 오인 우려가 낮은 경우 등에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사례2)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 화장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컵케이크류 제품과 유사함
		냄새	다양
		색깔	컵케이크류 색깔과 유사
		크기	식품 크기와 유사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컵케이크의 형태·색깔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케이크로 인식할 수 있는 각종 형태 고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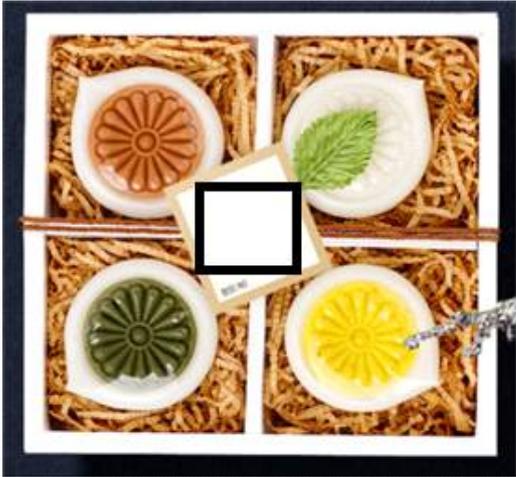
사례3) 초콜릿 형태의 화장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형태	초콜릿류 제품과 유사함	
	냄새	다양	
	색깔	초콜릿류 색깔과 유사	
	크기	식품 크기와 유사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식품으로 유통되는 초콜릿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		

사례4) 치즈 형태의 화장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형태	치즈류 제품과 유사함 (형태 다양)	
	냄새	다양	
	색깔	치즈 색상과 유사	
	크기	다양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치즈로 인식가능한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		

사례5) 떡류 형태의 화장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형태	떡류 제품과 유사함 (형태 다양)	
	냄새	다양	
	색깔	다양	
	크기	식품 크기와 유사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떡으로 인식가능한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		

사례6) 마카롱 등 제과류 형태의 화장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형태	마카롱 등 제과류와 유사함	
	냄새	다양	
	색깔	다양	
	크기	다양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제과류로 인식가능한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음		

사례7) 망고 등 과일 형태의 화장품비누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과일과 유사함 (형태 다양)
		냄새	과일향
		색깔	각종 과일과 유사
		크기	과일 크기와 유사 (작은 사이즈도 해당할 수 있음)
		용기 및 포장	내용물로 직접 사용하는 제품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3.2. 용기·포장을 포함한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하고 있으며, 내용물 섭취 우려가 있는 제품류

사례1) 요거트 형태의 팩류 제품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떠먹는 요거트류 제품과 유사함 (형태 다양할 수 있음)
		냄새	다양
		색깔	식품 색깔과 유사
		크기	식품 크기와 유사
		용기 및 포장	떠먹는 요거트류 용기형태와 유사, 식품 관련 명칭사용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일반 요거트처럼 제품 개봉 후 액상 내용물이 직접 노출가능		

사례2)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크림류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마요네즈 제품과 유사함
		냄새	다양
		색깔	식품 색깔과 유사
		크기	식품 크기와 유사
		용기 및 포장	마요네즈의 용기형태와 유사, 식품 관련 명칭사용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마요네즈와 유사한 방법으로 뚜껑 개봉 후 액상 내용물이 직접 노출가능		

사례3) 꿀 형태의 제품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꿀 제품과 유사함
		냄새	다양
		색깔	꿀 색깔과 유사
		크기	다양
		용기 및 포장	꿀 용기형태와 유사하며, 식품 관련 명칭사용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꿀과 유사한 방법으로 뚜껑 개봉 후 액상 내용물이 직접 노출가능		

사례4) 과일주스 형태의 핸드크림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식품 음료와 유사
		냄새	다양
		색깔	식품 음료와 유사
		크기	식품 음료와 유사
		용기 및 포장	식품 음료 용기형태와 유사하며, 식품 관련 명칭 사용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식품 음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		

사례5) 특정브랜드 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특정브랜드 제품과 유사함
		냄새	밀크파우더향(우유향과 유사)
		색깔	우유와 유사
		크기	다양
		용기 및 포장	특정 식품 브랜드 용기와 유사, 토출부는 화장품 형태 사용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특정 식품브랜드를 유사하게 반영하고, 내용물도 액상인 제품		

사례6) 특정브랜드 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등

이미지 예시	사유 검토		
	제품 특징	형태	특정브랜드 제품과 유사함
		냄새	바나나향 (해당식품 브랜드 특징)
		색깔	해당 식품 브랜드와 유사
		크기	다양
		용기 및 포장	특정 식품 브랜드 용기와 유사, 토출부는 화장품 형태 사용
	식품 오인 우려	있음	
섭취 우려	있음		
비고	특정 식품 브랜드를 유사하게 반영하고, 내용물도 액상인 제품		

4. 식품과 협업 가능 사례

4.1.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 없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또는 디자인 등을 사용한 경우

-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미지 예시	
	
<p><식품 상표 사용 화장품></p>	<p><식품 상표 사용 색조화장용 제품></p>
	
<p><캔디류 명칭 사용 파우더 제품></p>	

4.2. 제품 용기 · 포장은 식품 또는 특정 식품브랜드 형태 등을 모방했으나, 사용 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미지 예시	
 <p>〈립스틱〉</p>	 <p>〈립밤〉</p>
 <p>〈핸드 크림〉</p>	 <p>〈핸드 크림〉</p>
 <p>〈아이 섀도〉</p>	 <p>〈아이 섀도〉</p>